

사 천 시 공 보

제 599호

사천시 규칙 제688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을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599 호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으로 하고, “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관련법규”를 “관련 법규”로 하며, “적시하여”를 “제시하여”로 한다.

제4조 중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7항에 따라”로 하고, “의하고”를 “따르고”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599 호

사천시 규칙 제689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을 “사천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로 하고,
“기타 시행에 관하여” 를 “그 밖에 시행에”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599 호

제2조 중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을 “ 따라 별정직 공무원” 으로, “범위 내” 를 “범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3조제1항에 따른” 으로, “각호의 자를” 을 “각 호의 사람을”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직종” 을 “해당 직종”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로,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을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599 호

사천시 규칙 제690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 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하 “수당 지급규정” ” 을 “이하 “수당지급규정” ” 으
로, “제3조의 규정” 을 “제3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후” 를
“신청 후” 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신청기간내에 지방 공무원” 을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
무원” 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청기간내에” 를 “신청기간 내에”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599 호

제6조제2항 중 “결정전” 을 “결정 전”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 를 “제7조에”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상” 을 “「공무원연금법」상”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당해계급” 을 “해당 계급” 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따라 쓴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10조 중 “제9조의 규정” 을 “제9조” 로 한다.

제12조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13조 중 “제12조의 규정” 을 “제12조” 로 하고, 같은 조 중 “신청기간내에” 를 각각 “신청기간 내에”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적은 직계급” 를 “적은 직(계)급에” 로 하고,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있다” 를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계)급의 신청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전” 을 “결정 전” 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일계(계·등)급” 을 “동일직(계)급” 으로,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직(계)급” 을 “해당 직(계)급” 으로 한다.

제16조 중 “따라 쓴다” 를 “따른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599 호

사천시 규칙 제69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을 “지방공무원”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항 중 “소속공무원” 을 각각 “소속 공무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당해연도” 를 “해당연도” 로, “지체없이” 을 “지체 없이”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내 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체없이” 을 “지체 없이”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599 호

제5조 본문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를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로, “의하며” 를 “따라”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체없이” 을 “지체 없이”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를 “제3조제1항에도”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체없이” 을 “지체 없이”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599 호

사천시 규칙 제692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사천시 공무원 당직 근무 및 비상근무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를 “당직근무 및”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 및”을 “및”으로 한다.

제5조 중 “에 대하여”를 “에게”로 한다.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99호

제7조제2항 중 “공무원중” 을 “공무원 중” 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5호 본문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긴급을 요하는” 을 “긴급한” 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여” 를 “긴급하여” 로, “지체없이” 을 “지체 없이” 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항제3호 부터” 를 “제1항제3호부터” 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7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 을 “지체 없이” 로 한다.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 599 호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24조 중 “총무과장” 을 “비상소집업무담당 부서장” 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총무반” 을 각각 “행정반” 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상 시의” 를 “비상시” 로 한다.

제34조 중 “모사전송기” 를 “팩스” 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총무과” 를 “비상소집업무담당 부서”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599 호

사천시 규칙 제69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사 천 시 공 보

제 599 호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제2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2호의 적용” 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 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3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제4조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은 건축물” 을 “건축물”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 을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찜질방, 세차장, 세탁소,

이·미용실, 당구장 등 상품 진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599 호

③ 횡단보도가 30미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30미터 밖에 위치할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4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는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리로 측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따라 쓴다” 를 “따른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 599 호

사천시 규칙 제694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계법령” 을 “관계 법령” 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기산하여” 를 “계산하여” 로 하고, “사천시관내” 를 “사천시 관내” 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으로,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을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으로, “건설기계관리법시행

사 천 시 공 보

제 599 호

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으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를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를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를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내에서 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과 제2호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자가용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5조제2항 중 “운전경력중에” 를 “운전경력 중”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운전자” 를 “해당운전자”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업체” 를 “해당업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각호” 를 “각 호”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증빙자료” 를 “증명 자료”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를 “운전경력이란 운전면허를 받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간중에” 를

사 천 시 공 보

제 599 호

“기간 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한달이내” 를 “한달 이내” 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업무담당주사가” 를 “업무담당 팀장이” 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을 “제14조 별표 2에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택지내” 를 “주택지 내” 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면허발급신청자중” 을 “면허발급신청자 중” 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예비대상자중” 을 “예비대상자 중”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99호

(별표 1)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택시)

순위	내 용	배정 비율
1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	80%
2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으로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4년 6월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연도 총 증차면허대수 중 택시순위 면허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면허한다.)	
5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4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사람. 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제외한다. (*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사람은 해당연도 총 증차면허대수 중 택시순위 면허대수의 30% 범위 내에서 면허한다.)	
7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	
10	훈 포상 및 선행자 상훈법에 의하여 훈 포장을 받은 사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경찰청장 (뺑소니검거 유공자에 한함)의 표창을 받은 사람	
11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7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3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14	그 밖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사람	

사 천 시 공 보

제 599호

(사업용 및 기타)

순위	내 용	배정 비율
1	사업용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단, 버스(시내. 시외. 농어촌)는 1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배정대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버스운전자에게 60%,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게 40%를 배정한다. 이때 소수점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으로서 버스를 8년 6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버스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사람 (※ 해당연도 총 증차면허대수 중 사업용 및 기타 순위 면허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면허한다.)	
3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8년 이상 운전한 사람과 사천시 관내 관용차량을 20년 이상 운전한 사람 (※ 해당연도 총 증차면허대수 중 사업용 및 기타 순위 면허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면허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10년 이상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내. 시외. 농어촌버스는 1년, 그 밖에 사업용 자동차는 2년이 경과한 사람. 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제외한다. (※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는 해당연도 총 증차면허대수 중 사업용 및 기타 순위 면허대수의 30% 범위 내에서 면허한다)	
5	사업용 자동차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6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버스회사에서 12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	
8	훈 포상 및 선행자 상훈법에 의하여 훈 포장을 받은 사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경찰청장 (뺑소니 검거 유공자에 한함)의 표창을 받은 사람	
9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3년 이상 운전한 사람과 관용차량을 15년 이상 운전한 사람	
10	사업용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1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0년 이상 운전한 사람과 관용차량을 12년 이상 운전한 사람	
12	그 밖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사람	

사 천 시 공 보

제 599호

사천시 고시 제2019-29호

이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사천시에서 시행할 이곡 재해위험정비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 24.

사 천 시 장

1. 사 업 명 : 이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이홀동 384-2번지 일원
3. 사업의 목적 : 저수지 보수·보강을 통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농경지를 보호하여 영농 편익을 도모코자하며,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가. 사업의 내용
 - 저수지정비 1개소
 - 제당정비 : 그라우팅 32공, 사석보강 372㎡
 - 여수토방수로 정비 L=91m
 - 부대공사 1식
 - 나. 사업의 구역 : 경상남도 사천시 이홀동 일원

사 천 시 공 보

제 599호

5. 사 업 비 : 434백만 원(국비 217, 도비 71, 시비 146)
6.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12개월)
7. 사업의 효과 : 저수지 용수확보 능력, 내구성 증대 및 재해예방
8.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사천시청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10. 관계도서의 비치 및 열람장소 : 사천시청 건설수도과(전화 055-831-3278)

사 천 시 공 보

제 599호

사천시 고시 제2019-30호

온정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고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온정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제3항 및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01월 31일

사 천 시 장

1. 사업명칭 : 온정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 사업목적 :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비 : 500백만원

사 천 시 공 보

제599호

4. 주요사업내용

[단위 : 천원]

기능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총 계			500,000	
지역경관개선			424,000	
	온정천수변경관정비	- 위치 : 용현면 온정리 25번지 일원 - 사업량 : 하상정비 L=1.1km	116,000	
	전망마루	- 위치 : 용현면 온정리 670번지 일원 - 사업량 : 전망대 및 휴게공간 A=1,357m ²	281,000	
	들녘풍경길	- 위치 : 용현면 온정리 310번지 일원 - 사업량 : 자전거보관대, 안내표지 CCTV, 야생화식재	27,000	
지역역량강화			41,000	
	마을경관지킴이교	- 경관지킴이 교육	4,000	
	하천경관지도	- 경관지도 제작	7,000	
	경관농업컨설팅	- 농업컨설팅	8,000	
	리더교육	- 리더교육	4,000	
	주민교육	- 주민교육	4,000	
	선진지견학	- 선진지 견학	5,000	
	경관협정컨설팅	- 지속 가능한 마을경관 관리	9,000	
부대비용			35,000	
		- 설계비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6. 사업시행기간 : 2018년 ~ 2019년(2년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연번	위치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동리	지번		대	장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용현면 온정리	670	답	858	858	한국농어촌공사					

※ 관련 도서는 사천시청 4층 도시재생과(055-831-3242)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 599 호

사천시 고시 제 2019-33호

2019년 사천시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 부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 31.

사 천 시 장

1. 고시일 : 2019. 1. 31.
2. 고시방법 : 공보, 시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별첨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절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민원지적과 공간정보담당(☎831-282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도로명 부여 조서 1부. 끝.

사 천 시 권 표

도로명 신규 부여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위계	기초 간격	기초 번호	유사 및 동일 도로명	부여사유
			기점		종점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중심선 지번						
1	군명면	정곡들1길	군명면 정곡리 1001	군명면 정곡리 996	도면 참조	947	3 길	20	1/96	해당 없음	정곡리 앞들에 경지정리 된 지역에 일련번호 부여	
2	군명면	정곡들2길	군명면 정곡리 993	군명면 정곡리 987	도면 참조	1,858	3 길	20	1/186	해당 없음	정곡리 앞들에 경지정리 된 지역에 일련번호 부여	
3	군명면	정곡들3길	군명면 정곡리 993	군명면 정곡리 989	도면 참조	1,211	3 길	20	1/122	해당 없음	정곡리 앞들에 경지정리 된 지역에 일련번호 부여	
4	군명면	정곡들4길	군명면 정곡리 986	군명면 정곡리 986	도면 참조	957	3 길	20	1/96	해당 없음	정곡리 앞들에 경지정리 된 지역에 일련번호 부여	

사 천 시 공 보

도로명 신규 부여 도면

도면(중심선)



입면번호, 도로명

- 1. 정 곡들1길
- 2. 정 곡들2길
- 3. 정 곡들3길
- 4. 정 곡들4길

사 천 시 공 보

제599호

사천시 공고 제2019-165호

2019년도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1. 사 업 명 : 2019년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사업

2. 사업비 및 사업량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30%)	시비(30%)	자담(40%)	
23척	69,000	21,000	21,000	27,000	척당 3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기관개방 검사 시 소요된 기관정비 부품구입비 지원

☞ 지원한도 : 척당 3백만원 이내(자부담 포함 금액임)

※ 지원한도액 내에서 부품구입비만 지원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 사업량은 사업예산에 따라 변경(증감)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시 직접방문 신청

4. 신청기간 및 신청 장소

- 신청기간 : 2019. 2. 25. ~ 3. 26. / 30일간

- 접수장소 : 사천시청 해양수산과(어업지도팀 박청운/ 055-831-3120)

5. 신청대상 : 사천시 관내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두고 연안어업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어선 어업인 중 2019년도에 기관개방검사가 도래하는 어선

6.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방법

1) 규모(톤수)가 작은 어선(소형어선)

2)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노후어선)

3) 어선소유자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 상기 나열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사 천 시 공 보

제 599 호

7.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관내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두고 연안어업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어선
- 나) 상기어선 중 2019년도에 기관개방검사가 도래하는 어업인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사업신청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가)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과징금 처분 이상)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다)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 라) 어선법에 따른 계선계를 제출한 어선

8. 신청서류

- 1)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서식 1)
- 2)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 신청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 2019년도 기관개방검사 대상자임을 반드시 확인

9. 사업절차

① 사업대상자 신청(신청자 ⇒ 사천시)

⇒ 사업 신청서(서식 1)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의거 관련 서류 제출

② 사업대상자 선정(사천시장)

⇒ 신청서 접수기간 마감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산 범위 내 선정

③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사천시장 ⇒ 신청자)

⇒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

④ 보조금교부 신청(사업자 ⇒ 사천시)

⇒ 보조금교부 신청(서식 2)

⑤ 사업추진 및 준공(사업자)

⇒ 기관개방검사가 완료된 때 제반서류(확인증명서, 수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⑥ 사업비 지출(사천시장)

⇒ 지원한도액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부품구입비 지원

사 천 시 공 보

제 599호

10. 기타

- 1) 사업신청자는 공고문, 신청 안내서 등 2019년도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 사업 집행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해양수산과(전화번호 831-312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및 동 사업집행지침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31.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 599호

(서식 2)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사천시장 귀하